조문별 개정 이유서

1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(안 제9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- ※ 근거법령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3

나. 개정 내용

○ (서식 신설) 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부결 시 재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실증특례에 대한 재신청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사업자의 사업 추진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2.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(안 제11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36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- ※ 근거법령: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의2

나. 개정 내용

○ (서식 신설) 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 부결 시 재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임시허가에 대한 재신청 서식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사업자의 사업 추진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